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14.2.14 시행) 설명자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① 장기요양기관 금지 행위(본인일부부담금면제·할인, 수급자 유인 행위)

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 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 ▶ 행정처분기준 ▣ 1차 위반(업무정지 1개월), 2차(업무정지 3개월), 3차(지정취소 1년)
▶ 벌칙 기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주요내용) 법정 면제 또는 감경 받는 금액 외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 금지(제35조제5항)

-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제35조제6항)

○ 유사 판례(국민건강보험법 위반)

-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않으면서 공단부담금을 받은 경우, 영리 목적의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란,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않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징수한 보험료(공단부담금)을 받은 경우, 무료진료가 아닌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로 본다(서울행정법원, 2007, 구합 9440).

②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 신설 등 합리적 기준 마련

- (개정취지) 장기요양기관에 의한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수급권 제약(기관 선택권, 서비스의 질 등)으로부터 보호 필요
- (주요내용) 업무정지개념의 도입, 지정기관과 지정의제기관간 행정처분의 형평성 및 재지정금지기간을 법률로 상향 규정

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 신설(제37조 제1항·제3항, 제5항)

- (신설 위반행위) ①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② 유인·알선을 위해 금품 등 제공 ③ 업무정지기간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지정취소)

* 행정처분대상 위반행위 추가

신설된 처분대상 위반행위	처분 내용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지정취소(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 6월(최고한도)
○ 수급자 알선·소개·유인 등	지정취소(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 6월(최고한도)
○ 업무정지기간중 급여제공	지정취소(폐쇄명령)
○ 지정취소(폐쇄명령)처분 받은 자(법인대표 포함)	1년간 설치 제한
○ 업무정지기간 중인 자(법인대표 포함)	1년간 설치 제한

나. 자료 제출명령등 위반행위 처벌유형 변경(제37조 제1항·제3항)

- 행정형벌 및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법 제60조의 공단의 자료 제출요구 및 제61조 제1항의 복지부의 자료제출, 질문·검사등 위반 ⇒ 행정처분 제외
 -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관련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질문·검사위반 등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행정처분에 준치

* 행정조사 행정처분 기준 변경

위반행위	종전	변경
○ 제60조(공단 자료 제출 요구 등) 위반	지정취소(폐쇄명령)	처분제외
○ 제61조 제1항 위반(복지부 보험가입자 대상 자료제출 요구 등) 위반	지정취소(폐쇄명령)	처분제외
○ 제61조 제2항 위반(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대상 자료제출 요구 등) 위반	지정취소(폐쇄명령)	지정취소(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 6월(최고한도)

다. 행정처분에 대한 보고체계 마련(제37조제2항·제4항)

- 시·군·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통보

라. 재지정(신고)금지기간 법률에 명시(제37조제5항)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행정처분이후 폐업한 기관에 대한 재지정신청 및 재설치 신고 제한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

- (재지정금지기간 등) ① 지정취소(폐쇄명령)처분 ⇒ 1년간 ② 업무정지 처분 ⇒ 업무정지기간 동안(최대 6개월)

③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제37조의2)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개정취지)** 업무정지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입을 환수하여 공익 목적 및 처분의 효과성 제고
 - 과징금 도입으로 업무정지에 따른 수급자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주요내용)** 비금전적 위반행위와 금전적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과징금 적용의 적합성 제고
 - **(비금전적 위반행위)** 시설·인력기준 위반 등에 따른 업무정지 시 최고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
 - **(금전적 위반행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시 부당청구금액의 최고 5배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
 - **(과징금 부과요건)** 업무정지처분으로 수급자 불편이 우려되는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④ 위반사실 등의 공표 도입(제37조의 3, 제63조제3호)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시행령 제15조의3~제15조의5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공표대상)** 처분이 완료된 기관 중 거짓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상 이거나 총 급여비용의 10%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
- **(공표주체)** 시·군·구청장이 공표하되, 위반사실의 공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 시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위반사실의 공표에 앞서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공표사항)** 법률에서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주소, 장기요양기관 장의 성명에 대해 규정
-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기관과 구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

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도입(제37조의 4)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②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위반 행위를 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양수, 합병 또는 운영 시에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요내용)**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간 승계되고,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 기관을 양도한 경우 등은 양수인 등에게 처분절차 계속 진행

< 행정제재 처분효과 승계 대상 >

- ① 장기요양기관 양수인
- ② 합병으로 신설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 ③ 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본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승계 제외사유) 양수인 등이 양수, 합병 또는 운영 시에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처분사실 통보 의무화)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함

⑥ 행정형벌의 합리화에 따른 조문정비(제67조)

가. 벌칙 대상 추가

- (신설) ① 제32조를 위반하여 미신고·설치운영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한 자 ②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경한 자 ③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 소개·알선·유인 및 이를 조장한 자

* 신규 위반행위의 형사처벌 기준

신설된 처분대상	처분규정
○ 설치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설치운영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수급자 알선·소개·유인 및 이를 조장한 자 등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나. 벌칙 규정 변경

- (법정형 기준 상향)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법정형 기준 하향) ①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 행정조사 행정처분 기준 변경

위반행위	종전	변경
○ 비밀누설자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 장기요양급여제공 거부 자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	2년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7] 과태료 대상 신설 및 부과권자 변경(제69조)

가. 과태료 적용대상 변경(제69조 제1항)

- (신설)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의무 위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교부 위반, 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미 통보자 과태료 부과
- (삭제) 별칙으로 변경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의무위반자와 과징금 부과대상인 되는 거짓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외

* 과태료 행정처분 기준 변경

위반행위	종전	변경
○ 미신고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한 경우	과태료	처분제외
○ 거짓 신고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한 경우	과태료	처분제외
○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의무 위반한 경우	-	과태료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교부의무 위반한 경우	-	과태료
○ 처분사실 통보의무 위반한 경우	-	과태료
○ 거짓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경우	과태료	처분제외

나. 과태료 부과권자 변경(제69조 제2항)

- 행정처분권자의 일원화를 위해 과태료부과권자를 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①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 별표2)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 과징금액의 산정은 법 위반유형별*로 구분하되 합산처리

* ① 시설·인력배치 기준 위반행위 등,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 청구

- 1일당 과징금에 해당하는 위반유형(부담청구에 따른 과징금 제외)의 경우 산정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천만원으로 함

* 과징금 부과 기준

◇ 1일 기준 과징금 부과(5천만원 이내)

- ▶ 시설인력이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5천만원 한도에서 연간 총수익에 해당하는 1일당 과징금을 업무정지기간만큼 부과

- ▶ 과징금 산정방식 : 업무정지기간 × 1일당 과징금 금액*

* 1일당 과징금 : 연간 총수입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 공단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별로 과징금 표에서 정한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 * 대상 위반 행위 >

①지정기준(설치기준) 위반행위, ②장기요양급여 거부행위, ③본인부담금 면제·감경행위, ④수급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⑤자료제출명령등 위반행위, ⑥종사자에 의한 (성)폭행 등 행위

*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3호의 2, 제3호의 3, 제5호, 제6호 일부, 법 제37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일부

◇ 부담청구액 기준 과징금 부과(부담금액의 5배 이내)

-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청구 한 경우에 대해 총 부담금액의 5배 이내에서 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이 포함된 업무정지구간에 해당되는 과징금 부과

- ▶ 과징금 산정방식 : 업무정지기간 구간별 과징금 금액

< 업무정지기간 구간별 과징금 금액 >

구분	업무정지기간 구간			
	10일까지	11일~30일까지	31일~50일까지	50일 초과
과징금 금액	총 부담금액의 2배	총 부담금액의 3배	총 부담금액의 4배	총 부담금액의 5배

- 두 종류 이상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1일당 과징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먼저 그 각각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과징금을 산정한 후, 그 각각의 과징금을 합하여 해당 과징금 부과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총 금액을 산정

② 과징금 부과·납부방법에 관한 절차(제15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 납부 통지하고, 납부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

③ 위반사실 공표에 따른 기관 식별정보(제15조의3)

- 다른 장기요양기관과 공표대상 기관이 구별될 수 있는 기관 정보를 추가로 규정

* 공표사항(법 제37조의3) :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 명칭·주소, 장기요양기관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 추가 규정 사항 >

- ① 장기요양기관의 유형 및 급여종류, 지정(설치)일, 기관 장의 성별
- ②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노인복지시설인 경우 그 시설의 장)의 성명

④ 위반사실 공표 절차 및 방법 규정(제15조의4)

가. 공표 절차

- 공표대상기관 선정(시·군·구, 공표심의위) → 공표대상 사실통보(시·군·구청장) → 청문절차 진행 → 청문의견 검토(시·군·구, 공표심의위) → 공표(시·군·구청장)

나. 청문절차의 진행

- (청문회 출석 시) 청문결과를 고려하여 공표여부 결정. 다만, 공표 심의위를 거친 경우 청문결과에 대해 재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
- (청문회 불출석 시) 최초 통지내용대로 공표하기로 결정

다. 공표 방법

-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표*, 추가로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 가능.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공표

*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 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추가 공표 가능

수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5조의5)

가. 위원회 구성

-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를 위해 시·군·구에 위원 수 5명*(위원장 포함,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구성 >

- ① 시민단체 추천인 1인, ② 법률전문가 1인, ③ 현장실무 경험자 1인, ④ 지자체 소속 공무원 1인, ⑤ 공단 소속 직원 1인

나. 위원회 운영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⑥ 과태료 규정 정비(제29조, 별표3)

- 법(제69조) 개정 사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 대상과 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선정
- 종전의 별표3, 2. 사목의 2)~4)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행위 차수 적용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1차 위반으로 적용

* 과태료 행정처분 기준 변경

위반행위	종전			변경			비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 미신고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50	100	200				제외
○ 거짓 신고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50	100	200				제외
○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의무 위반자				50	100	200	신설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자				50	100	200	신설
○ 처분사실 통보의무 위반자				500	500	500	신설
○ 거짓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자	25	50	100				제외
○ 거짓 자료 제출·답변·보고(제61조)	100	200	300	100	200	300	변경
○ 현지조사 거부·방해·기피(제61조)	300	300	300				

① 행정처분기준 명확화(제29조, 별표2)

가.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처분의 형평성 제고

- 법(제37조) 개정 사항을 반영한 행정처분 대상과 그에 따른 행정 처분 기준 선정 및 장기요양기관 간* 처분 기준 통일

* 노인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제31조 적용), 재가장기요양기관(제32조 적용)

* 행정처분 기준 변경 사항

위반행위			중전				변경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거짓지정(신고)			지정취소/ 폐쇄명령				지정취소/ 폐쇄명령							
지정(설치) 기준 부적합	31조 적용		경고	지정취소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폐쇄명령				
	32조 적용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폐쇄명령								
장기요양급여 거부	31조 적용		경고	지정취소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폐쇄명령				
	32조 적용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폐쇄명령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 감경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폐쇄명령					
수급자 소개, 알선, 유인 및 조장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폐쇄명령					
거짓 급여비용 청구	31조 적용	2%미만	경고	지정취소			업무정지 10일 ~ 6월	업무정지 10일 ~ 6월	지정취소/ 폐쇄명령					
		2%이상	지정취소											
	32조 적용	2%미만	경고	영업정지 60일	폐쇄 명령									
		2%이상	영업정지 10일~30일											
소득, 급여등 관련 자료제출 등 (제60조) (제61조 제1항)	31조 적용		경고	지정취소										
	32조 적용	60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폐쇄명령								
		61조1항	경고	폐쇄명령										
보고 및 검사 (제61조 제2항)	31조 적용		경고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폐쇄명령						
	32조 적용		경고	폐쇄명령										
수급자 보호	폭행 상해	31조 적용	경고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32조 적용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폐쇄명령								
	성폭행 성희롱	31조 적용	경고	지정취소			지정취소/ 폐쇄명령							
		32조 적용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폐쇄명령								
	유가 방임	31조 적용	경고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폐쇄명령					
		32조 적용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폐쇄명령								
업무정지기간 중 장기요양급여제공							지정취소/ 폐쇄명령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처분기준 설정

- 위반행위가 둘 이상으로 처분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경고-업무정지-지정취소(폐쇄명령))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적용
-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을 합산
- 부당청구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청구에 따른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
- 위반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지정취소(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지정취소(폐쇄명령) 대상 위반행위 >

- ①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② 처분할 위반행위가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 i) 폭행·상해, ii) 성희롱·성폭행, iii) 유기·방임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다. 행정처분 감경기준의 도입

-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거짓 청구 등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음

< 행정처분 감경제외 >

- ① 부당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중 허위청구, 과다청구 등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시·군·구)의 현지조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명령위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③ 종사자 등에 의한 수급자 폭행·상해, 성폭력·성희롱, 수급자 유기·방임행위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위반행위 차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 법령시행('14.2.14) 이전의 위반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법령시행 당시 종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재 위반한 경우
 - (지정기관) 종전에 부당청구 외 위반행위(제5호의 경우 현지조사 위반에 한정)에 해당하여 1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 ⇒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라 2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 적용
 - (신고기관) 종전에 부당청구 외 위반행위(제6호의 경우 현지조사 위반에 한정)
 - ⇒ 종전의 위반행위 횟수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로 보아 행정처분기준을 적용
 - (부당청구) ⇒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라 1차 위반 시 기준 적용

② 시·군·구의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관리 및 통보(제29조의2)

- 시군구청장은 행정처분대장에 처분내역(과징금 포함)을 기록·관리하고, 처분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다른 지자체에 통보 가능하도록 함

③ 양도인 등의 행정제재처분 사실 통보(제29조의4)

- 행정처분(절차진행) 사실을 양수인 등에게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통보

* 행정처분청,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 처분대상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적발일 또는 처분일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에 같은 과징금 적용 기준」 고시 주요내용

① 수급자 불편 초래 등 과징금 부과 요건 도입(제2조)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불편 초래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의 세부사항 규정

* 과징금 부과 요건

<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

- 인근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 증족 등으로 실질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급여종별 인근 지역 판단기준 >

구 분		자치구	자치구의 지역
시설 급여	요양시설	해당 동 및 경계를 인접한 동 내에 이용가능 시설이 없는 경우	해당 읍면동 및 경계를 인접한 읍면동 내에 이용가능 시설이 없는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인이하)	경계를 인접한 자치구 내에 이용가능 시설이 없는 경우	
재가 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해당 동 및 경계를 인접한 동 내에 이용가능 시설이 없는 경우	해당 읍면동 및 경계를 인접한 읍면동에 이용가능 시설이 없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경계를 인접한 자치구 내에 이용가능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자치사군, 행정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 및 경계를 인접한 자치사군, 행정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이용가능 시설이 없는 경우

- 시설급여 제공기관으로서 1등급 수급자가 전체 현원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30인 이하 요양시설 및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이 5인 이상이거나 전체 현원의 30% 이상인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지자체, 공단이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이하인 장기요양기관
- 처분절차 진행 중 폐업하거나, 법인시설이 변경되어 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업무정지가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인 이상 공동개설기관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하여 부당금액 등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 공익상 필요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과징금 신청방법 규정(제3조)

-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이 과징금부과 요건에 해당하여 처분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신청서 제출